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9. 1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9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 9. 7)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 선서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별표 사항 신설(안 제2조 별표1, 별표1의2).

○ 공무원의 집단이나 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 방해 금지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주장 표시의 복장이나 물품 착용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강등’에 따른 연가가산, 재직기간 계산 및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규정개정(안 제18조제2항, 안 제19조, 안 제21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및 별표4).

○ 공가의 사유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할 때 가능하도록 추가(안 제23조제10호).

○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조정(안 제24조제1항의 별표3), 유산 및 사산한 공무원 휴가일수 개정(안 제24조제5항), 불임 치료휴가신설 (안 제24조 제12항).

○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헌 영)**

○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2275호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0호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령 제15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복무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정비하고자 별표1의 선서문을 개정하였으며, 별표1의2에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안 제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안 제25조, 안 제28조).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의 징계로 ‘강등’ 처분을 하였을 때 연가가산(안 제18조제2항),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안 제21조제1항), 재직기간 계산(안 제19조)에 추가.

※ 강등사유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 경력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별표4).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함(안 제20조제6항).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의 사유를 신설(안 제23조제10호).

○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일부 개정(안 제24조별표3),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음(안 제24조제12항).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3 호

제출연월일 : 2010.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문구 조정 및 선서방법·절차 기준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나 **공무원의 집단 · 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반대 금지 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4조)

다. 직무수행시 **정치적 주장 표시의 복장·물품착용 금지 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12조)

라.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18조의2)

- 별표4 신설 : 연가가산 방법 신설

마. 재직기간 계산시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 미산입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19조)

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명문화**에 따른 개정 (안 제20조)

사.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21조)

아.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항 개정 (안 제22조)

자. **공가사유 중 단체교섭 참석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23조)

차. **특별휴가 관련조항 신설 및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안 제24조)

-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1일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주어지는 휴가기준 변경

카.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산입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 (안 제25조)

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항 개정 (안 제23조)

파.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안 제13조 ~ 제16조2, 제27조 ~ 제28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 생략사유 :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1호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서) ① 공무원은 취임할 때 법 제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의2(비밀업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20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3항 관련)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담당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법 제47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선서) **① 공무원은 취임할 때 법 제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제3조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현행과 같음)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③ (생 략) **〈신 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1~2호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 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2호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3호 (생 략)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 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3호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생 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④ (생 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 2호 (생 략)** **② ~ ③항 (생 략)**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 2호 (현행과 같음)** **② ~ ③항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호~4호 (생 략)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할 때** 6호~9호 (생 략) **〈신 설〉**	제23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호~4호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호~9호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④ (생 략)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⑥~⑪ (생 략) 〈신 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⑪ (현행과 같음)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31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	
〔별표1〕 선서문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별표1의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 2조제 3항 관련)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td></tr>
<tr><td>〈신 설〉</td><td>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td></tr>
<tr><td>〈신 설〉</td><td>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담당한다.</td></tr>
<tr><td>〔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h>비고</th></tr><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d></td></tr><tr><td>자녀</td><td>1</td><td></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d></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3</td><td></td></tr><tr><td>입양</td><td>본인</td><td>14</td><td></td></tr><tr><td rowspan="3">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d></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2</td><td></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2</td><td></td></tr><tr><td colspan="4">〈신 설〉</td></tr></table>
비고 : 1～2 (생략)</td><td>〔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h>비고</th></tr><tr><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5</td><td></td></tr><tr><td>자녀</td><td>1</td><td></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td>1</td><td></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5</td><td></td></tr><tr><td>입양</td><td>본인</td><td>20</td><td></td></tr><tr><td rowspan="4">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d></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2</td><td></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2</td><td></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td><td>1</td><td></td></tr></table>
비고 : 1～2 (현행과 같음)</td></tr>
</table>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2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 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신 설〉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